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6. 11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,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복식부기회계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복식부기전담 기구 및 인력이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'07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기반체제 구축 등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복식부기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

· 존속기한 : 당초 : 2006년 12월 31일

변경 : 2008년 12월 31일

3. 참고사항

가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다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· 예고기간 : 2006. 10. 26 ~ 11. 14(20일간)

· 예고방법 : 성주군공보, 성주군홈페이지, 군·읍면게시판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같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한시 정원표(제5조와관련)

실과소별	정 원		존속기한	비 고
	계	내 역		
합 계	6	일반직 : 6급 1, 7급 3, 8급 2		
기획감사실	2	일반직 : 7급 1, 8급 1	2007.12.31.	사업별 예산제도
재 무 과	2	일반직: 7급 1, 8급 1	**2008. 12. 31.**	**복식부기**
자치혁신과	2	일반직 : 6급 1, 7급 1	2007.6.30.	행정혁신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	개정이유
실과 소별	정 원		존속기한	실과 소별	정 원		존속기한	
	계	내 역			계	내 역		
합계	6	일반직:6급1 7급3, 8급2		----	--	-------		
기 획 감사실	2	일반직:7급1 8급 1	2007.12.31	----	--	-------	------	
재무과	2	일반직:7급1 8급 1	**2006. 12. 31**	----	--	-------	**2008.12.31**	복식부기담당 존속기한(2년)연장
자 치 혁신과	2	일반직:6급1, 7급 1	2007.6.30	----	--	-------	-------	
				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			